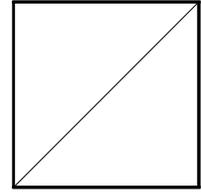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55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의
결
사
항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2020.6.30.)이 2020.12.29. 종료됨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조정,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조치명령을 6개월 연장(2020.12.30. ~ 2021.6.29.)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명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

가. 영업 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 정지 기간, 관리인 임기 연장

- 기존 조치명령과 동일하게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모든 영업을 정지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은 제외함
-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며, 관리인은 현재의 관리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원의 직무 대행 및 집합투자 재산 보호를 위한 운용지시를 수행

*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의 임원 직무집행은 제외

** 금감원 소속 관리인(◇◇◇, 11.18일 변경된 관리인) 및 예보 소속 관리인(◆◆◆)

※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은 관리인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20.12.16.) 심의필

다. 관계법규 (붙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 제3-26조(경영개선권고) ~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3-35조(긴급조치)

<별 지>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

□ 2020.6.30. 금융위원회의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따라 2021.6.29.까지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 다 음 -

1. 조치명령의 내용

가. 영업의 정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49조의3의 영업,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정지한다. 다만, 다음의 업무는 영위할 수 있다.
- 집합투자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
 - 투자자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배분에 관한 업무
 -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 기존 영업관계의 정리나 종료를 위한 업무
 -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나.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의 업무는 할 수 있다.
-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 및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 ◆◆◆를 유지한다.
- 금융감독원 소속 관리인은 내부통제, 집합투자재산 보호에 필요한 운용지시 및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예금보험공사 소속 관리인은 고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관리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관리인보조인을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인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증권 판매사 직원을 관리인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조치명령 연장기간 : 2020.12.30. 00:00 ~ 2021.6.29. 24:00

- 영업의 정지 기간,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기간을 2021.6.29. 24:00까지 6개월 연장한다.
- 다만,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관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소속 관리인의 선임기간은 금융감독원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붙임)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5.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나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10.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한 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자에 관한 정보의 제출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청산업무와 관련한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 및 영 제369조에 따라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수단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하여 조치를 명할 것
2. 조치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될 것
3.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치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4.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 다만, 투자자 피해 또는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2. 경비절감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부실자산의 처분
 5.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7.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 ③ ~ ⑨ (생략)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 조직의 축소
4. 자회사의 정리
5. 임원진 교체 요구
6. 영업의 일부정지
7. 합병·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 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 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 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3-35조(긴급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쇄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 3.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 4. 제3-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 5.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41